

원화 스테이블코인 동향 조사

(’25. 7. 28. 디지털지속가능금융팀)

□ 한국은행 입장

- 이창용 총재,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사별 화폐 가치가 다를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
 - 과거 19세기 미국에서 은행권이 난립해 통화정책에 혼선이 발생했던 것처럼, 스테이블코인도 유사한 혼선을 초래하여 결국 중앙은행 중심 질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충격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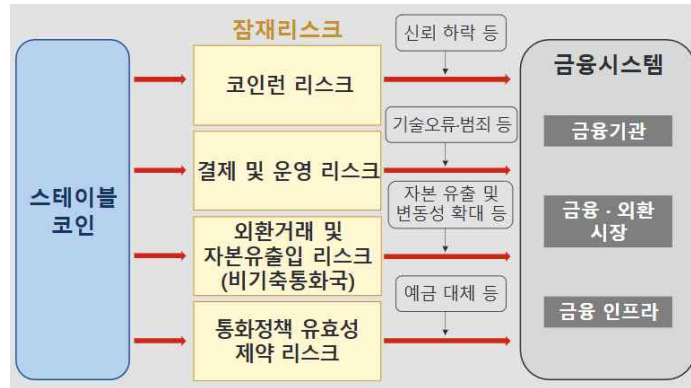
<비은행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의 문제점>

발행사에 따라 화폐 가치 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행사의 신뢰도, 준비금 등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 - 화폐의 단일성*이 무너질 우려 - 통화정책의 전달력이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음
외환거래법 무력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외환거래법을 통하지 않고 원화 해외 반출·외환 반입 가능해지면 당국의 외환 규모 파악 및 규제 어려움 - 외환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음 -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문제현상이 발생 중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심화
은행과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용자가 맡긴 원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 - 비은행기관이 은행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예금의 개념인 준비금을 가진다면,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함
시노리지(주조 차익) 사적 귀속 문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준비자산 운용 수익이 발행업자에 귀속되어 시노리지가 사적 영역에 부여됨

*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(Singleness of money)

-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미국처럼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 기관도 발행자로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우선 은행에만 허용해야한다는 입장
- 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언급
 -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범용 지급 결제수단 혹은 통화 대체 수단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산될지 예단하기 어려움

<스태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주요 리스크>



○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완료 후 스테이블코인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잠정 중단

- (프로젝트 한강)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업
- 해당 사업은 1차 실거래 테스트 이후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

* CBDC, 스테이블코인,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이니 상황을 보겠다는 것

-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충돌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성격이 동일

○ 한국은행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인가 기구 구성 필요성 언급

-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유관기관 간 합의 기반 독립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의견 전달(' 25. 7. 6.)

* 미국의 Genius법 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(SCRC) 구조에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등이 참여하며 특히 비금융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

- 이창용 총재는 6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 인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

□ 입법 동향

-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환율 상승,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
 -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환율 불확실성과 복잡한 외환거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,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자금 유치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함(권칠승 의원, '25. 5. 21)
 -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정책 약화, 원화 대체현상 심화, 자본유출 가속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
 -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원화 주권 보호, 무역 결제 효율성, K-컨텐츠 등 국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-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스테이블코인 관할권 이슈
 -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중앙은행 중심 인허가 및 감독권 행사 방식이 글로벌 규제 및 기술동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(' 25. 6. 2.)
 - * 최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독립기구를 구성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심사하는 방안(플랜B)을 제시(' 25. 7. 6.)
 -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아닌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
 -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또한 특정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
 - 민병덕 의원(민주당)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*하는 등의 제도적 틀이 담김

<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>

제5편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디지털자산발행신고서

제103조(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요건)

- 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1.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일 것
 2.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 3.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 4.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
 5.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
 6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 7.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
 8.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

제104조(발행의 신고)

-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1.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관한 사항
 2.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 인력의 이력과 정보
 3.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보
 4. 디지털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계획 정보
 5. 총 발행량과 기간별 발행 또는 채굴량에 관한 정보
 6. 이용자 보호 계획 정보
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발의를 추진 중인 안도걸 의원(민주당)의 디지털지급결제수단법안에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TF(기재부, 한은, 금융위 함께 관리주체로 참여)가 주도

□ 시장참여자 동향

○ 민간 금융사 간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논의·테스트 진행 중

-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·DID협회*는 KB국민, 신한, 우리, NH농협, IBK기업, 수협,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원화 스테이블 권소시움 구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(' 25. 4. 24.)

*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제도화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협의체

- 해시드*는 주요 금융지주 관계자와 스테이블코인 논의 추진(' 25. 6. 29.)

*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이자 액셀러레이터

- 농협·신한은행·케이뱅크는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팩스(Pax)*에 참여해 국가 간 송금 개선 테스트를 진행

*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자산 플랫폼 기업 프로그맷 (Progmatt·지난해 9월 일본 3대 메가뱅크 주도로 설립)을 통해 원화-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및 정산을 테스트

- 여신금융협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 하기 위해 신한·삼성·KB국민·현대·롯데·우리·하나·비씨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테스트 포스(TF)를 구성

○ 은행, 핀테크 등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잇따르자, 관련 주가코인이 급등하는 등 시장 과열 발생(' 25. 6. 30)

<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은행, 거래소 상표권 등록 현황>

업체명	내용	상표권 수
우리은행	KRW에 WON, WOORI 등을 조합	20건
신한은행	KRW에 SHB 등을 조합	21건
국민은행	KRW에 KB를 조합	17건
하나은행	HanaKRW, KRWHana 등	16건
BNK금융지주	BNKFC, BNKO 등	14건
IBK기업은행	IBKWON, IBKRW, IBKKRW 등	10건
업비트	UPWON, UPKRW 등	66건
빗썸	BithumbKRW, KRWSTABLE 등	10건
코빗	KWON, KWC 등	4건
해시드	KRWo, OKRW, FKRW 등	10건
(주)비바리퍼블리카	KRWTOSS, KRWV 등	24건
카카오뱅크	BKRW, KRWB, KKBWKK 등	4건
케이뱅크	KRWKST, KRWKBK, K-STABLE 등	12건

○ 부산은행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환 연구 진행 중

- 부산은행은 오픈블록체인·DID협회의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가입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힘(' 25. 7. 2.)

-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모델도 구축할 계획으로 동백전을 스테이블코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‘신동백전’ 연구를 진행 중